

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420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핀테크랩 운영'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,
- 나.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, '적정'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서울핀테크랩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2년8개월 (2024.4.~2026.12.)
- 다. 소요예산 : 1,704백만원('23년 기준)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-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·연장평가, 시설 및 장비 운영, 안전관리
- 전문 멘토링, 특화 교육 프로그램,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, 금융사 등 유관기관 네트워킹
- 해외 투자설명회(IR),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로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
-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운영, 지정 사례 공유회 개최
- 데모데이 개최, 밋업 진행 등 투자유치 지원
- 민간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‘핀테크 허브’ 구축
-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지원 정책 협력 등

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 -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을 관리하고 입주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〈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〉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…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…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〈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〉

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
2.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
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

⋮

제18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·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(☎ 2133-5249)